

“외화 선불충전금 기반 해외주식 투자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3건 신규 지정 의결

- 금번 신규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는 총 901건

금융위원회(위원장 이덕원)는 11월 5일 정례회의를 통해 3건의 혁신 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901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다.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 [☞\[참고\]](#))

① 외화 선불충전금 기반 해외주식 투자 서비스 (NH투자증권, 트래블월렛)

트래블월렛은 해외에서 외화 결제 및 인출이 가능한 충전식 선불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 기존에는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 선불금을 원화로만 환급받을 수 있었다. 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소비자가 외화 선불금을 본인의 증권사 위탁계좌로 환급받고, 이를 해외증권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여행자금 마련 등 목표를 위해 유흥자산을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미래세대 금융교육을 위한 맞춤형 예·적금 추천 서비스 (아이쿠카)

아이쿠카는 선불충전금을 활용한 미성년 자녀의 용돈 관리 플랫폼을 제공 중인 업체로, 금번 지정을 통해 동 플랫폼을 이용 중인 부모가 금리, 우대 조건 등에 따라 예·적금 상품을 비교하고 자녀의 명의로 대신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③ 엘포인트 플러스 신한통장 서비스 (롯데멤버스, 신한은행)

엘포인트 앱은 롯데멤버스의 모바일 멤버십 마일리지 플랫폼으로, 금번 지정을 통해 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신한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이용자가 가맹점 결제를 하고자 할 때 동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계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요약]

구 분	업체명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규지정 (3건)	NH투자증권, 트래블월렛	트래블월렛 외화 선불충전금 기반 해외주식 투자 서비스
	아이쿠카	미래세대 금융교육을 위한 맞춤형 예적금 계좌 추천 서비스
	롯데멤버스, 신한은행	엘포인트 플러스 신한통장 서비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책임자	과 장	정선인 (02-2100-2530)
		담당자	서기관	마 순 (02-2100-2841)
			사무관	김혜수 (02-2100-2872)
<공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책임자	과 장	도종록 (044-215-4750)
		담당자	사무관	이찬희 (044-215-4754)
<공동>	금융위원회 은행과	책임자	과 장	신장수 (02-2100-2950)
		담당자	사무관	박준상 (02-2100-2952)
<공동>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	책임자	국 장	위충기 (02-3145-7120)
		담당자	팀 장	이수인 (02-3145-7125)
<공동>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책임자	국 장	김형원 (02-3145-8020)
		담당자	팀 장	송명준 (02-3145-8030)

<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3건) >**① 트래블월렛 외화 선불충전금 기반 해외주식 투자 서비스 (1건)**

(NH투자증권, 트래블월렛)

[서비스 주요내용]

소비자가 트래블 월렛을 통해 충전·보유한 외화 선불금을 본인의 증권사 위탁계좌로 환급해 해외증권 투자에 활용하고, 추후 해외증권 매각자금 등 투자수익을 동일 계좌에서 트래블월렛의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재이체하여 여행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외국환거래규정 제2-39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2-14조 제1항

고객의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고객의 증권사 위탁계좌에 외화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트래블 월렛이 고객의 주식 위탁계좌와 연결하여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신청서비스 이용 고객의 거래 절차를 간소화하여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소액 외화자산을 활용하여 외화증권 투자시 환전·재환전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주요 부가조건]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외화 환급’ 관련 거래 한도를 준수하여 동 서비스가 환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거래 한도를 1회 1천달러, 1일 5천달러, 연간 1만달러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② 미래세대 금융교육을 위한 맞춤형 예적금 계좌 추천 서비스 (1건)

(아이쿠카)

[서비스 주요내용]

신청회사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 아이쿠카 앱을 사용하는 만 7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

[특례내용] ①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및 제12조제1항 ②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

①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타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해야하나, 현행 법령은 예금성 상품 중개업무의 등록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등록에 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아울러 ②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예금성 상품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사 전속의무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예금성 상품 정보를 비교·추천받을 수 있어 금융회사 간 금리 경쟁이 촉진되고, 이에 따른 금리 상승 효과로 소비자 편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부가조건]

소비자 오인방지를 위해 예금성 상품의 계약주체가 금융회사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피해 발생 시 원활한 손해배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급격한 자금이동 등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회사와 금융회사간 중개 계약 체결시 판매비중을 한도 내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③ 엘포인트 플러스 신한통장 서비스 (1건)

(롯데멤버스, 신한은행)

[서비스 주요내용]

엘포인트 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신한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하여 신한은행은 보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용자가 엘포인트 가맹점에서 결제를 할 때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루어지는 서비스입니다.

* 롯데멤버스(주)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멤버십 마일리지 플랫폼

[특례내용] 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및 제12조제1항

②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①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나, 현행 인가정책상 예금성 상품의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롯데멤버스가 엘포인트 플러스 신한통장 개설을 중개할 수 있도록 등록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②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닌 자의 금융상품 광고를 금지하나, 롯데멤버스가 엘포인트 앱을 통해 제휴 계좌 상품을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엘포인트 앱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예금자 보호제도가 적용되는 신한은행 예금통장에 보관하고, 발생한 이자를 이용자에게 귀속시키는 등 소비자 편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서비스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서비스 혁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부가조건]

소비자 오인방지를 위해 예금계좌의 계약주체가 신한은행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배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제휴계좌 개설 수와 엘포인트 추가 적립률을 제한해야 하며, 동 서비스로 수집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활용 범위는 계좌조회 등 정보제공 목적으로 제한합니다.